

의안번호	제454호
의결 연월일	2013년 3월 일 (제318회)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유완백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3년 2월 일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완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4
----------	-----

발의연월일 : 2013년 2월 일

발 의 자 : 유완백·정 헌·황규철·권기수·
김도경·윤성옥·이수완 의원(7명)

1. 제안 이유

- 도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지원사항을 강화하도록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여성기업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2조)
- 나. 지원 제한을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조항의 삭제(안 제4조)
- 다.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여성기업 지원사항 강화(안 제7조, 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1의 조목 및 제6조 중 “제5조의1”을 “제5조의2”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지원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의 경영지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p> <p>제4조(지원의 제한) ① 여성기업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점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충청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p>	<p>제2조(정의) ----- -----.</p> <p>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입지지원·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협력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 ----- ----- ----- -----.</p>
<p>제5조의1(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 ② (생략)</p>	<p>제5조의2(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도지사는 제5조의1에 따라 수립된 종합 계획을 토대로 매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제6조(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 제5조의2----- ----- -----.</p>
<p>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현행	개정안
<p>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p> <p>1.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p> <p>2. 같은 조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p>	<p>1.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p> <p>2. 제9조의 지원 사항</p> <p>3.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p>
<p>제9조(지원사항)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신설)</p> <p>5.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 추진에 있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p> <p>② (생략)</p>	<p>제9조(지원사항) ①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영지도</u></p> <p>6. ----- ----- -----</p> <p>②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登記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②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시군별 여성기업 업체수 현황

(2011.12.31 기준)

시 군	여성기업수
합 계	42,300
청 주 시	17,511
충 주 시	6,416
제 천 시	4,473
청 원 군	3,187
보 은 군	953
옥 천 군	1,414
영 동 군	1,302
진 천 군	1,704
괴 산 군	1,002
음 성 군	2,223
단 양 군	1,192
증 평 군	923

※ 자료출처 : 2011년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

2. 산업분류별 여성기업 업체수 현황

(2011.12.31 기준)

산업분류	여성기업 사업체수
	42,300
농업·임업 및 어업	12
광업	8
제조업	1,869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
하수·폐기물 처리 등	50
건설업	682
도매 및 소매업	11,315
운수업	388
숙박 및 음식점업	15,545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등	97
금융 및 보험업	137
부동산업 및 임대업	99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8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9
교육 서비스업	2,75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3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096

※ 자료출처 : 2011년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

3. 2012년 여성기업 지원 주요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추진(위탁)기관
①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 ▪ 센터 운영 지원	- 창업보육실 운영 및 입주기업 지원 : 13백만원	기업유치 지원과
② 내일의 여성CEO 육성지원 ▪ 내일의 여성CEO 육성교육	- 내일의 여성CEO 육성 교육비 지원 : 4백만원	기업유치 지원과
③ 여성기업 자금 지원 ▪ 자금지원 평가시 가점 부여 ▪ 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적용	- 3 ~ 10점 - 0.5%	기업유치 지원과
④ 여성기업 판로 지원 ▪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설정 ▪ 공공구매 입찰시 가점부여 (신인도 평가) ▪ 우수제품 전시장 입주 우대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물품 및 용역 : 각 구매총액의 5% - 공사 : 구매총액의 3% - 여성기업 : 0.5점 - 여성고용 우수기업 : 0.5~1점 - 중소기업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입주 기업 선정시 우대 - 박람회 참가자 선정시 가점 부여 : 3~5점	기업유치지원과 (회계과 협조) 회 계 과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⑤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 홍보·마케팅 지원 ※ 장애인 기업 포함	- 홈페이지, 홍보물 제작 등 지원 : 28백만원 (14업체)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⑥ 여성기업 기술 지원 ▪ 국제규격인증(ISO) 지원우대	- ISO 획득지원 선정시 가점 부여 : 5점	미래산업과
⑦ 여성기업전용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 내 시범지정 운영	- 전용산업단지 시범지정 추진	기업유치 지원과
⑧ 여성기업 네트워크 구축 ▪ 여성CEO 멘토링 워크숍	- 여성기업 멘토링 워크숍 개최 지원 : 4백만원	기업유치 지원과
⑨ 여성기업인 표창 ▪ 모범 여성경제인 표창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창립 기념 모범 여성경제인 시상 : 2명	기업유치 지원과
합 계	- 예산지원 : 49백만원	

4. 2013년 여성기업 지원 주요사업 추진계획

사업명	지원내용	추진(위탁)기관
①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 ▪ 센터 운영 지원	- 창업보육실 운영 및 입주기업 지원 : 13백만원	기업유치지원과
② 내일의 여성CEO 육성지원 ▪ 미래여성경제인 창업마인드 함양	- 내일의 여성CEO 육성 교육비 지원 : 4백만원	기업유치지원과
③ 여성기업 자금 지원 ▪ 자금지원 평가시 가점 부여 ▪ 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적용	- 2 ~ 10점 - 0.5%	기업유치지원과
④ 여성기업 판로 지원 ▪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설정 ▪ 공공구매 입찰시 가점부여 (신인도 평가) ▪ 여성기업제품 안내서 제작 배포 ▪ 우수제품 전시장 입주 우대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물품 및 용역 : 각 구매총액의 3.5% - 공사 : 구매총액의 2% - 여성기업 : 1점 - 여성고용 우수기업 : 1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홍보물 배포 : 12백만원 - 중소기업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입주 기업 선정시 우대 - 박람회 참가자 선정시 가점 부여 : 3~5점	기업유치지원과 (회계과 협조) 회 계 과 기업유치지원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⑤ 여성기업전용산업단지 운영 ▪ 산업단지 내 전용구역 지정	- 전용산업단지 지정, 우선입주(3천평)	기업유치지원과
⑥ 여성기업 네트워크 구축 ▪ 충북여성CEO 포럼지원	- 교류확대를 통한 여성기업경쟁력 강화 : 10백만원	기업유치지원과
⑦ 여성기업인 표창 ▪ 모범 여성경제인 표창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창립 기념 모범 여성기업인 시상 : 2명	기업유치지원과
합 계	- 예산지원 : 39백만원	